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16 선고 2022나684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

담당변호사 김윤석

피고, 항소인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9. 28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6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0가단5315690 판결

주 문

1.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.
3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,772,346원 및 그 중 149,822,616원에 대하여는 2020. 12. 4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8%, 그
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20. 6. 29.자 증여계약을 『150,772,346원 및 그 중 149,822,616원에 대하여 2020. 12. 4.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돈』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20. 6. 29.자 증여계약을 149,822,61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C은 원고에게 149,822,616원을 지급하라(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부분 중 대위변제금 149,822,616원을 초과하는 미수추가보증료, 법적절차비용,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).

이 유

1. 피고 B의 항소의 적법 여부

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였고,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.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,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부분은 수익자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로서 채무자인 피고 B은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바, 피고 B이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투지 않은 이상 피고 B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2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(1. 인정사실) 기재와 같으므로

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3.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,772,346원(= 대위변제금 149,822,616원 + 추가 보증료 575,840원 + 법적절차비용 373,890원)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9,822,6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0. 12. 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인 2021. 8. 28.까지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(3.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중 가. 나. 부분)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

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바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),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79,078,558원(= 피고 B에 대하여 확정된 1심판결에 따른 구상금인 150,772,346원 및 그 중 149,822,616원에 대하여 2020. 12. 4.부터 2021. 8. 28.까지는 연 8%, 그 다음날부터 당시 변론종결일인 2022. 9. 28.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)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79,078,5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

의무가 있다.

다만, 피고 C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 C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,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하여, 제1심판결과 같이 162,758,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.

라.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

(1) 주장

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49,822,616원을 상환할 의사를 표시하였다. 원고는 상환 협의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위 대위변제금의 이자를 면제하여 줄 수 있고 2020년에는 대위변제금 상환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나, 이 사건 소를 기습적으로 제기하였다.

즉,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이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,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므로,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면제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.

(2) 판단

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거나,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위변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마. 소결론

따라서,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20. 6. 29.자 증여계약을 162,758,155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 C은 원고에게 162,758,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피고 B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수경, 판사 김우현, 판사 이창열